

4.3.27 졸업인증제규정

제정	2016. 02. 26.
개정	2018. 10. 23.
개정	2018. 10. 31.
개정	2018. 12. 04.
개정	2020. 02. 05.
전부개정	2021. 01. 28.
개정	2022. 12. 07.
개정	2023. 08. 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 「학칙」 제57조 및 「초당인재상구현에관한규정」에 따라 졸업자격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편입생, 외국인 유학생, 만학도는 졸업인증 적용을 면제한다.

② 전 항에서 정한 졸업인증제 적용 면제자 외에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졸업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인증제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제2장 졸업인증

제3조(졸업인증 기준) ① 졸업인증의 최소 기준은 「초당인재상구현에관한규정」에서 정한 마일리지 취득 방법에 따라 총점 50,000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08.07.>

② 마일리지 점수 산정 기준 및 영역별 배점에 관한 사항은 「초당인재상구현에관한규정」에 따른다.

제4조(졸업인증 적용) ①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3조의 졸업인증 최소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수료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졸업인증 기준을 충족한 학기의 졸업일로 학위를 수여한다.

제5조(졸업인증 절차) ① 학생은 매 학기 초당인재 자격증 취득 증명자료를 학생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학과에서는 졸업 학기에 졸업사정위원회회의를 통해 학생의 졸업인증 기준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심의 결과를 교무처에 제출한다.

② 교무처는 필요 시 학생성공진흥원으로부터 학생이력관리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증빙자료로 확보하고, 졸업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졸업인증 자격 충족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2.12.07.>

제3장 졸업인증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운영) 졸업인증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졸업인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성공진흥원장,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취창업지원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07.>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간사 및 서기는 교무처 직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졸업인증 기준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졸업인증 기준 충족여부 심의 및 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졸업인증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기타

제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졸업자격 인증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제2조 제4호(Tulip역량인증)는 입학연도에 따라 다음과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16학년도 신입학생: 적용하지 않음
2. 2017학년도 신입학생: 시행일 이후 각1건
3. 2018학년도 신입학생: 시행일 이후 각2건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부칙개정) 2018년 10월 23일 공포한 부칙 제2조(경과규정)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

1. 3학년에 재학중인 2016학년도 신입학생 : 적용하지 않음
2. 2학년에 재학중인 2016학년도 이후 신입학생 : 시행일 이후 센터별 각2건(총6건)
3. 1학년에 재학중인 2016학년도 이후 신입학생 : 시행일 이후 센터별 각4건(총12건)

3. (경과규정) 제4조(졸업인증 대체인정)의 경우 2018학년도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은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① 제2조 4호(Tulip역량인증)는 프로그램별로 인증 건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2018학년도 2학기에 제2조 4호(Tulip역량인증) 프로그램을 참여한 학생은 인증 건수에 포함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2월 05일부터 시행하고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2016~2018학년도 입학생은 졸업인증제 적용을 면제한다.

② 규정 개정 이전 능력별인증 및 Tulip역량인증 취득 내역은 「초당인재상구현에관한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로 소급하여 인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